

첨부서류

1. 이송취급소 완공검사합격확인증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 가. 해당 이송취급소를 포함하는 사업소 안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 나. 해당 이송취급소를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
 - 다. 해당 이송취급소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 중 변경에 관계된 것
 - 라. 해당 이송취급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계된 것
 - 마. 압력안전장치·누설검지장치·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개요 중 변경에 관계된 것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4.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합니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5.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중 변경에 관계된 것
6.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서류 중 변경에 관계된 것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작성한 서류(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이송취급소 변경허가신청에 사용합니다.
2. 가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부분의 난은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가사용 승인신청을 별도로 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을 사용함).
3.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4. 기점·중점 및 경과지란에는 배관이 설치되는 시·군·구를 적고 기점 및 중점란에는 기점 또는 중점의 사업소명을 같이 적습니다.
5. 품명(지정수량)을 적는 경우에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적습니다.
6. 음영으로 된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